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입주자모집공고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주택공급신청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주택공급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종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로 견본주택 인원 제한이 해제되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 없이 일반관람이 가능하나, 실내 인원수에 따라 관람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은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를 통해 분양일정안내,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방문 안내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자격확인을 위한 사전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 공급계약 시 방문예약을 통해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기간에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하며,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를 통해 자세한 내용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신종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제출 일정,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분양상담 전화(☎051-746-3992),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신청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기사항증명서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공급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11.1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26. 입니다.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주택공급신청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20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반드시 확인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 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주택 및 '분양권 등']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 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 주택)	○	○	X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주택공급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주택공급신청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홀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 발표일이 2017.10.18.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멸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 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행위탁자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등**
  - 해당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동법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

- 재당첨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통장은 계약여부에 상관없이 재사용 불가함)
- 향후 1순위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접수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주택공급신청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가점제 당첨 제한 및 1순위자격 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 보증이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됩니다.
  - 중도금 대출은 개인의 주택소유, 대출유무, 분양권 소유 여부 및 정부정책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금액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및 대출 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의 분양상담시 대출여부에 대한 내용을 확정하여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2021.10.26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잔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가 강화되어 추후 입주에 따른 잔금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별 대출한도가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문제는 사업주체에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및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 **10년의 범위 내 주택공급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 금지)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에 따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불법 전매, 공급질서 교란 등)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의 재공급 방법은 특별공급(신혼부부 등)의 경우 해당지역 거주자 중 특별공급주택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하고,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지역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재공급 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020.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자격을 제한합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출하는 서류 중 제2항제2호 및 제2항제6호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2항제7호의 출입국사실증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4.02.05.(월)		2024.02.06.(화)	2024.02.07.(수)	2024.02.19.(월)	2024.03.01.(금) ~ 2024.03.03.(일)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건본주택 방문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주소</li> <li>-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li> <li>- 문의 : ☎051-746-3992</li> <l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 참고</li> <li>※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 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2020.10.27.) 결과를 반영하여 공동주택의 62세대(다자녀 특별공급 3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4세대)에 대하여 공급금액(발코니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제외)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할인)하여 공급합니다.

- 분양가 인하(할인) 규정에 따라 선별된 특별공급 세대 중 정당계약기간 내에 계약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며, 이외 유형(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 무순위, 선착순 등)의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이.맘 부산플랜」의 분양가 인하(할인) 혜택은 해당 세대의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적용되며, 분양권 전매 시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위 : 세대]

구분		059.8912A	059.2316B	070.1538A	070.1241B	072.9672	073.6062	075.1052	076.3789	합계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 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5	5	5	5	5	5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3	3	3	3	3	3	3	3	24

	합계	7	7	8	8	8	8	8	8	62
--	----	---	---	---	---	---	---	---	---	----

-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중 정당당첨자만을 대상으로 「아이.맘 부산플랜」 해당세대를 선별하며,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기 표와 같이 각 타입별 「아이.맘 부산플랜」 세대 배정이 되며 각 타입별 경쟁이 발생 시에는 해당 경쟁 유형 추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기준으로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하며, 선별되는 세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되는 동·호수 추첨과 무관합니다.
  - ① 다자녀 특별공급
    - 1) 주택형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별함 (단,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 함)
    - 2) 1)의 낙첨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아이.맘 부산플랜」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미달시에 한함.)
  -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 주택형별로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아래 순위에 따라 공급하며, 순위별로 무작위 추첨으로 선별함 (단, 해당 순위별 경쟁발생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 1) 1순위 : 소득기준 우선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 2) 2순위 : 1순위에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 일반공급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아이.맘 부산플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5% 미달시에 한함.) 및 1)와 1순위에서 낙첨된 분
    - 3) 3순위 : 1)과 2)에 따라 공급하고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2)에서 낙첨된 자 및 추천제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분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른 무작위 추첨 당첨자(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된 자)를 포함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무작위 추첨 당첨자는 청약신청시 입력한 소득기준(우선공급/일반공급)을 충족하여야 하며, **자격검증결과 청약신청내역과 상이한 경우 「아이.맘 부산플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9조(특별공급 비율 조정 등)에 따라 공급비율이 기존 18%에서 13%로 하향 적용되어 공급됩니다.
- 추첨일 :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검수 기간 중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추첨 일정 및 구비서류를 개별 통보 후, 건본주택에서 공개추첨하여 선별합니다. 추천 대상자의 착신 불가(수신인의 통화 거절, 스팸 문자 등록, 연락처 변경 등) 및 참석 불가 사유(해외 여행, 병의원 입원 등 일신상의 불참 사유 포함)등으로 인하여 미참석 시, 추첨 불참에 따른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분양가 인하(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2023.11.10.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3144호(2024.01.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9-2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5층 ~ 지상 36층, 2개동 총 244세대 [특별공급 122세대(일반[기관추천] 24세대, 다자녀가구 38세대, 신혼부부 30세대, 노부모부양 8세대, 생애최초 2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 입주예정일 : 2025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계		
민영 주택	2024000031	01	059.8912A	59A	59.8912	23.3036	83.1948	35.2324	118.4272	9.0605	23	3	4	3	2	1	13	10	-
		02	059.2316B	59B	59.2316	24.1210	83.3526	34.8444	118.1970	8.9607	23	3	4	3	2	1	13	10	-
		03	070.1538A	70A	70.1538	28.3140	98.4678	41.2697	139.7375	10.6131	33	3	5	4	3	1	16	17	1
		04	070.1241B	70B	70.1241	26.1249	96.2490	41.2522	137.5012	10.6086	33	3	5	4	3	1	16	17	1
		05	072.9672	72	72.9672	27.3270	100.2942	42.9247	143.2189	11.0387	33	3	5	4	3	1	16	17	1

	06	073.6062	73	73.6062	27.5893	101.1955	43.3006	144.4961	11.1353	33	3	5	4	3	1	16	17	1
	07	075.1052	75	75.1052	30.5603	105.6655	44.1824	149.8480	11.3621	33	3	5	4	3	1	16	17	1
	08	076.3789	76	76.3789	28.0558	104.4347	44.9317	149.3664	11.5548	33	3	5	4	3	1	16	17	1
<b>합 계</b>										<b>244</b>	<b>24</b>	<b>38</b>	<b>30</b>	<b>22</b>	<b>8</b>	<b>122</b>	<b>122</b>	<b>6</b>

▣ 주택형 표시 안내

<b>입주자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b>	<b>059.8912A</b>	<b>059.2316B</b>	<b>070.1538A</b>	<b>070.1241B</b>	<b>072.9672</b>	<b>073.6062</b>	<b>075.1052</b>	<b>076.3789</b>
<b>약식표기 주택형</b>	<b>59A</b>	<b>59B</b>	<b>70A</b>	<b>70B</b>	<b>72</b>	<b>73</b>	<b>75</b>	<b>76</b>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하여 계약면적 등 합계면적은 소수점 이하 오차 발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홍보물-제작물 등에는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청약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sup>2</sup>) × 0.3025 또는 공급면적(m<sup>2</sup>)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만을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실, 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기반시설(도로 등) 부지 제공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약식표기)	동·호	층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소계	1차	2차	1차(30%)	2차(30%)	입주지정일
							계약시	2024.04.01.	2024.06.20.	2024.09.20.	
59A	102동 1호	12~16층	5	98,256,000	435,744,000	534,000,000	10,000,000	16,700,000	160,200,000	160,200,000	186,900,000
		18~35층	18	99,176,000	439,824,000	539,000,000	10,000,000	16,950,000	161,700,000	161,700,000	188,650,000
59B	102동 2호	12~16층	5	96,416,000	427,584,000	524,000,000	10,000,000	16,200,000	157,200,000	157,200,000	183,400,000
		18~35층	18	97,336,000	431,664,000	529,000,000	10,000,000	16,450,000	158,700,000	158,700,000	185,150,000
70A	101동 2호	2층	1	107,824,000	478,176,000	586,000,000	10,000,000	19,300,000	175,800,000	175,800,000	205,100,000
		3~4층	2	110,032,000	487,968,000	598,000,000	10,000,000	19,900,000	179,400,000	179,400,000	209,300,000
		5~7층	3	112,240,000	497,760,000	610,000,000	10,000,000	20,500,000	183,000,000	183,000,000	213,500,000
		8~11층	4	114,448,000	507,552,000	622,000,000	10,000,000	21,100,000	186,600,000	186,600,000	217,700,000
		12~16층	5	115,736,000	513,264,000	629,000,000	10,000,000	21,450,000	188,700,000	188,700,000	220,150,000
		18~35층	18	116,840,000	518,160,000	635,000,000	10,000,000	21,750,000	190,500,000	190,500,000	222,250,000

70B	102동 3호	2층	1	92,828,000	411,672,000	504,500,000	10,000,000	15,225,000	151,350,000	151,350,000	176,575,000
		3~4층	2	95,128,000	421,872,000	517,000,000	10,000,000	15,850,000	155,100,000	155,100,000	180,950,000
		5~7층	3	97,336,000	431,664,000	529,000,000	10,000,000	16,450,000	158,700,000	158,700,000	185,150,000
		8~11층	4	110,400,000	489,600,000	600,000,000	10,000,000	20,000,000	180,000,000	180,000,000	210,000,000
		12~16층	5	111,320,000	493,680,000	605,000,000	10,000,000	20,250,000	181,500,000	181,500,000	211,750,000
		18~35층	18	112,424,000	498,576,000	611,000,000	10,000,000	20,550,000	183,300,000	183,300,000	213,850,000
72	102동 4호	2층	1	97,244,000	431,256,000	528,500,000	10,000,000	16,425,000	158,550,000	158,550,000	184,975,000
		3~4층	2	99,728,000	442,272,000	542,000,000	10,000,000	17,100,000	162,600,000	162,600,000	189,700,000
		5~7층	3	101,936,000	452,064,000	554,000,000	10,000,000	17,700,000	166,200,000	166,200,000	193,900,000
		8~11층	4	115,552,000	512,448,000	628,000,000	10,000,000	21,400,000	188,400,000	188,400,000	219,800,000
		12~16층	5	116,656,000	517,344,000	634,000,000	10,000,000	21,700,000	190,200,000	190,200,000	221,900,000
		18~35층	18	117,760,000	522,240,000	640,000,000	10,000,000	22,000,000	192,000,000	192,000,000	224,000,000
73	101동 3호	2층	1	113,712,000	504,288,000	618,000,000	10,000,000	20,900,000	185,400,000	185,400,000	216,300,000
		3~4층	2	115,920,000	514,080,000	630,000,000	10,000,000	21,500,000	189,000,000	189,000,000	220,500,000
		5~7층	3	118,312,000	524,688,000	643,000,000	10,000,000	22,150,000	192,900,000	192,900,000	225,050,000
		8~11층	4	120,520,000	534,480,000	655,000,000	10,000,000	22,750,000	196,500,000	196,500,000	229,250,000
		12~16층	5	121,808,000	540,192,000	662,000,000	10,000,000	23,100,000	198,600,000	198,600,000	231,700,000
		18~35층	18	122,912,000	545,088,000	668,000,000	10,000,000	23,400,000	200,400,000	200,400,000	233,800,000
75	101동 1호	2층	1	112,792,000	500,208,000	613,000,000	10,000,000	20,650,000	183,900,000	183,900,000	214,550,000
		3~4층	2	115,184,000	510,816,000	626,000,000	10,000,000	21,300,000	187,800,000	187,800,000	219,100,000
		5~7층	3	117,576,000	521,424,000	639,000,000	10,000,000	21,950,000	191,700,000	191,700,000	223,650,000
		8~11층	4	119,968,000	532,032,000	652,000,000	10,000,000	22,600,000	195,600,000	195,600,000	228,200,000
		12~16층	5	121,072,000	536,928,000	658,000,000	10,000,000	22,900,000	197,400,000	197,400,000	230,300,000
		18~35층	18	122,360,000	542,640,000	665,000,000	10,000,000	23,250,000	199,500,000	199,500,000	232,750,000
76	102동 5호	2층	1	117,392,000	520,608,000	638,000,000	10,000,000	21,900,000	191,400,000	191,400,000	223,300,000
		3~4층	2	119,784,000	531,216,000	651,000,000	10,000,000	22,550,000	195,300,000	195,300,000	227,850,000
		5~7층	3	121,992,000	541,008,000	663,000,000	10,000,000	23,150,000	198,900,000	198,900,000	232,050,000
		8~11층	4	124,384,000	551,616,000	676,000,000	10,000,000	23,800,000	202,800,000	202,800,000	236,600,000
		12~16층	5	125,672,000	557,328,000	683,000,000	10,000,000	24,150,000	204,900,000	204,900,000	239,050,000
		18~35층	18	126,776,000	562,224,000	689,000,000	10,000,000	24,450,000	206,700,000	206,700,000	241,150,000

#### ■ 공통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또는 오피스텔이 있는 동은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중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 및 오피스텔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약식표기)		59A	59B	70A	70B	72	73	75	76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1	1	1	8
	장기복무제대군인	-	-	1	1	-	-	-	-	2
	10년이상장기복무군인	-	-	-	-	-	-	1	1	2

	중소기업근로자	1	1	-	-	1	1	-	-	4
	장애인(부산광역시)	1	1	1	1	1	1	1	1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4	4	5	5	5	5	5	5	38
	신혼부부 특별공급	3	3	4	4	4	4	4	4	30
	생애최초 특별공급	2	2	3	3	3	3	3	3	2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1	1	1	1	1	1	8
	합 계	13	13	16	16	16	16	16	16	122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 (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li>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조건, 주택공급신청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li> <li>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li> </ul>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로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li> <li>-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li> <li>※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공급신청자</li> <li>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li> <li>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li> <li>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예) 전혼자녀 등</li> </ul> </li> </ul> </li> </ul>
주택공급신청 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li>-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는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li> </ul> </li> </ul> </li> </ul>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의 500% 선정합니다. 단, 특별공급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600% 미만인 경우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특별공급 신청자 전원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며,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노부모양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6호 미적용)
- 당첨자 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청약Home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인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이 동일단지(다른단지 포함)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둘다 인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아래의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

※ 주택공급신청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추천기관

구 분	관련법규	해당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근로자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20.10.27.) 심의결과를 반영,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3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미성년자녀 수 ▶ 주택공급신청자 연령 ]

- 해당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포함) ②미성년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접수 시 배점표에 자필 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지역(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및 2018.01.31.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 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2020.10.27.) 심의결과를 반영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3% 범위) : 3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합니다. 단,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출산은 출산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단, 신혼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26.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을 포함하나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 [ 소득별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1) 소득별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2) 순위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3) 거주지역 및 미성년 자녀수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 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한데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811,343원~ 10,415,123원	9,146,468원~ 12,195,290원	9,648,591원~ 12,864,787원	10,441,968원~ 13,922,622원	11,235,344원~ 14,980,458원	12,028,721원~ 16,038,293원
소득기준 초과/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주택청약 FAQ [추가 정정] (국토교통부 발간, 2022.08.05.)” 참고]

우선공급 - 기준소득 [ 5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일반공급 - 상위소득 [ 20%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첨제 [30%]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연간소득÷근무월수)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또는 소득금액증명 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기준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 자산기준 충족으로 자격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의 자산의 합산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토지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9% 범위) : 2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 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예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 + 어머니(직계존속) 등재 : 평형 상관없음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미혼인 공급신청자(단독세대)만 등재 :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함)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1.26.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3인 이하 세대에만 해당하며,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가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을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세 납부내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함. 단,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만판매원 등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내 소득세를 납부한 자로서 통산하여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 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신청자의 세대원 전원이 구입, 상속, 증여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 한번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지분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소득 ▶ 거주지역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130%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초과 ~160%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택공급신청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주택청약 FAQ [추가 정정] (국토교통부 발간, 2022.08.05.)" 참고]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

월평균소득 (연간소득÷근무월수)	근로자	연간소득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무월수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 기준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상 소득금액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 자산기준 충족으로 자격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의 자산을 합산한 합니다.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 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신청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주택공급신청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격을 인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8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자격요건 및 세대주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시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자)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주택공급신청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li> <li>■ 신청자 중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2023.01.26.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한 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li> </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li> <li>■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li> <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li> <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 <li>■ <b>거주지역 판단 시 유의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li> <li>- 기타지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한 자</li> </ul> </li> <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입주자저축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li> <li>■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b>청약통장 관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 하여야 청약 가능합니다.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 <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li> </ul> </li> </ul> </li> </ul>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중복청약(당첨 시) 처리기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민간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에 본인이 동시 청약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실시 및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일 변경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은 동일 단지의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중복 청약을 허용하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은 무효처리하며 또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으로써 동일 단지인 경우 동일세대내에서 본인과 세대원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각 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될 경우 둘 다 계약이 가능합니다.**
-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세대분리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 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계약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포함)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거주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 주택	1. 해당 주택건설지역 :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 기타지역 :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1순위	전용 60㎡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ol> </li> </ul>
			전용 60㎡초과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의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li> </ol> </li> </ul>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p> <p>나) <b>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b>,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를 포함한다.</p> <p>다) <b>만 30세 이상인 미혼자녀는</b>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b>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에</b>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p> <p>라) <b>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b>,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한다.</p> <p>마)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b>외국인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불가하다.</b>          ※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b>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b>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한다.</p>
<b>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b>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만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p>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18세 이상 미혼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 서류 (1) 만18세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미혼자녀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수 산정시 유의사항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외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경우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하나,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3.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4. 외국인(외국국적자) 직계존·비속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함)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축(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여부는 최초 접수경쟁률로 판단합니다)

- 청약접수결과 경쟁 발생 : 정당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소유
- 청약접수결과 미달 발생 : 정당계약자 주택소유, 잔여세대 추가계약자 주택 미소유 (단, 정당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소유)

구 분	공급세대	접수	정당당첨자 계약 ②	잔여세대		잔여세대 추가계약 ①	주택소유 판단
				미분양(가)	미계약(나)		
A유형(타입)	100	200(경쟁)	100	X	X	-	② 주택소유
B유형(타입)	100	200(경쟁)	80	X	20	20	② 주택소유 / (나) 주택소유
C유형(타입)	100	50(미달)	30	50	20	70*	② 주택소유 / (가), (나) 주택소유 아님
D유형(타입)	100	50(미달)	50	50	X	50*	② 주택소유 / (가) 주택소유 아님

① 사전예약, 사후추가접수, 사업주체 선착순 모집에 의한 계약 / ② 정당당첨자 계약은 모두 주택소유로 봄.

\*경쟁 미발생으로 미달된 경우 정당당첨자가 계약포기 후 미분양분이나 미계약분을 계약할 경우 주택소유로 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계약취소 물량을 재공급 받는 경우에는 모두 주택소유로 간주함.

- 계약해지로 인한 재공급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간주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4

### 청약 신청일정, 장소 및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4.02.05.(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사업주체 건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li> <li>-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li> </ul>
일반공급	1순위	2024.02.06.(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4.02.07.(수) 09: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단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됨.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주택공급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주택공급신청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 또는 ⑥ 신한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b>PC 청약시</b>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주택공급신청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b>스마트폰 청약시</b>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주택공급신청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p>①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신청」⇒「APT청약신청」⇒「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li> </ul> <p>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공급신청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등록방법 :「주택공급신청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청약연습방법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주택공급신청자격 검증</li> </ul>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주택공급신청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자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6:00)**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li> <li>※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준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주택공급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주택공급신청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 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구비서류(건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 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특별공급신청서/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 (특별공급신청서는 건본주택 청약시 필요)</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특별공급신청서 생략</li> </ul>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li>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li> </ul>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도 : 주택공급 신청용 / <b>본인발급용 필수</b></li> </ul>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li> </ul>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li> </ul>
	○		출입국사실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b>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b> (기관추천특별공급 제외)</li> </ul>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li>•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li> </ul>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li> <li>-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li> <li>-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li> <li>-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li> <li>※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li> </ul>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li> </ul>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li> </ul>
	○		한부모가족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li> </ul>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 및 세대분리 여부 확인</li> </ul>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li> </ul>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18세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ul>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가 입양인 경우</li> </ul>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li> </ul>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 / 임신중진 경우</li> </ul>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 신고일, 미성년자녀수, 월평균 소득, 자산 기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 조회조건에 "전체"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자세한 소득증빙서류는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		• 사실증명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b>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b> - 자세한 자산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 산정에서 포함하고자 할 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 1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실적, 혼인 유무, 미성년자녀수, 혼인신고일, 월평균 소득, 자산 기재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자세한 소득세 납부 증빙서류는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회조건에 "전체"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구원수 산정 기준'에 포함되는 만19세 이상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 자세한 소득증빙서류는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비사업자 확인각서		• 견본주택 비치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		• 사실증명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전년도 소득이 없는 자에 한함) -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간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b>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원은 전원 공동인증서 준비 필수</b> - 자세한 자산증빙서류는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이상 직계비속을 미혼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가구원수 산정에서 포함하고자 할 때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1년이상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한국부동산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손자녀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 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신청 주택공급신청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 [표1]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함)

해당자격		소득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재직증명서[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날인)	• 해당직장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b>신규사업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li> <li>• 사업자등록증(사본)</li> <li>※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중이어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공단</li> <li>• 세무서</li> </ul>
	<b>법인대표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li> <li>• 전년도 재무제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b>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li>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li> <li>•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b>국민기초생활 수급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 증명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복지센터</li> </ul>
	<b>일용근로소득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li> <li>•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해당직장</li> </ul>
	<b>무직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사업자 확인각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li> <li>•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 비치</li> <li>• 세무서</li> </ul>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증빙서류는 홈택스 발급 및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으며, 세무서 또는 해당직장에서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 전체 및 성명'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인정됩니다.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입증 기본서류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직증명서(직인날인)</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li>• 건강보험공단</li> </ul>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자등록증 사본</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1년(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li> <li>•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li> </ul>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li> <li>• 소득금액증명(근로자 및 자영업자) 및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제출)</li> <li>※ 결정세액이 환급확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제출</li> <l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li> <li>•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or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서</li>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li> <li>• 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li> <li>•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li> <li>※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전일 경우</li> <li>* 일반,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확정(예정) 신고서 (단, 금액이 - 또는 0일 경우 소득세 납부이력으로 불인정)</li> <li>* 면세사업자 :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li> <li>•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등) :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직장</li> <li>• 세무서</li> </ul>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합니다. \*적용례) 2016, 2018, 2019, 2022, 2023년에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동산소유현황 및 등기사항증명서</li> <li>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결과(건축물 소유자)</li> <li>토지 공시가격(개별공시지가) 확인서</li> <li>부동산 종합증명서(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li> <li>재산세 과세내역(주택 외 건축물의 경우 이택스, 위택스에서 조회가 어려울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li> <li>행정복지센터 및 정부24</li> <li>이택스(서울) 및 위택스(서울 외)</li> <li>일사편리</li> </ul>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대장</li> <li>축산업 허가증</li> <li>토지이용계획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복지센터</li> <li>지자체 축산과</li> <li>토지이음</li> </ul>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li> <li>- "신청하신 성명(명칭), (주민)등록번호로는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함</li> <li>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 : 재산세 없음을 증빙해야함</li> <li>- 부동산소유현황에 보유 부동산이 없는 경우 전국단위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소 및 인터넷등기소</li> <li>행정복지센터(인터넷발급은 전국단위 발급 안됨)</li> </ul>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 방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li> <li>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li> <li>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li> <li>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li> <li>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li> </ul>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60㎡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ul> </li> <li>*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li> <li>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li> </ol> </li> <li>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신청자가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지역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li> <li>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li> <li>•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a href="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얼양정.com">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터얼양정.com</a>)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합니다.</li> </ul>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li> <li>•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는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li> <li>• 부적격 당첨자는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li> <li>•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신청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li>•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li> <li>•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 및 그세대에 속한 자는 규제지역내 청약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4.02.19.(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li> <li>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 2024.03.01.(금) ~ 2024.03.03.(일), 3일간 (10:00~16:00)</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li> </ul> </li> </ul>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배정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청약Home'홈페이지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全 은행 주택공급신청자)
이용기간		2024.02.19.(월) ~ 2024.02.28.(수)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4.02.1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및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 안내**

▣ 자격확인 제출서류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기간은 홈페이지 등에 개별 공지 예정입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특별공급 구비서류'를 참조하여 제출					
공통 서류	○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수집안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발급용 필수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 현재 1년 이상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주택공급신청자와의 관계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표기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 국내거주기간 확인 / 기록대조일 : <b>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b>
	○		복무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세대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의 출입국사실증명 ※ 주택공급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 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연간 183일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일반공급 (가점제)	○		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존속을 3년이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 : <b>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b>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직계존속의 배우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b>출생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6.)로 지정하여 발급</b>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손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적격 의심자 추가서류	○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	해당주택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부적격 사유에 따른 소명자료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인감증명서	주택공급신청 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 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 체결	2024.03.01.(금)~2024.03.03.(일), 10:00~16:00 (3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li> <li>※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a href="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a>)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li> </ul>	☎051-746-3992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 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턴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합니다.
-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주택공급계약용 (본인 발급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서류 사전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해당자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정부수입인지(중이문서용)		※ 인지세를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세부사항 홈페이지 참고)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
	○		신분증 /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발급분은 제외) / 자필서명 또는 인장날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단,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는 본인발급만 인정합니다.(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상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납입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기계식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인·허가 도서에 준하며 시공하며,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5% 완납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도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최초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아래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 ※ 과세기준별 인지세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 방법

인지세 납부 안내	
대상	부동산 분양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체결 대상
납부기한	[분양계약]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 [전매] 명의변경 승인일
납부 및 구입 방법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비회원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 구입 및 결제 → 전자수입인지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우체국, 은행 방문하여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등)에 첨부

※ 2022.12.31. 「인지세법」 제8조 일부개정예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22.12.3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조제9항 일부개정예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BNK경남은행	207-0128-6476-01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결제 불가)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8 입주 관련 안내 및 기타사항

###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입주자 사전방문은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45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 입주예정일 : 2025년 4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기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휘트니스시설) 등으로 구성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 ①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	25,200,000	2,520,000	22,680,000	
59B	25,300,000	2,530,000	22,770,000	
70A	29,800,000	2,980,000	26,820,000	
70B	29,200,000	2,920,000	26,280,000	
72	30,400,000	3,040,000	27,360,000	
73	30,700,000	3,070,000	27,630,000	
75	31,900,000	3,190,000	28,710,000	
76	31,600,000	3,160,000	28,440,000	

- 본 아파트는 골조공사 중에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일괄 시공되어 단위세대 기본형(발코니 비확장)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최하층 세대인 2층 세대의 침실1 발코니(비확장)에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하향식피난구는 설치되지 않고 별도 구획(칸막이벽 및 도어 설치)된 피난공간이 설치되며, 침실1 발코니(비확장)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므로 별도의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본공사 시 설계변경을 통해 피난공간이 삭제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6층 이하 세대의 70A, 73, 75, 76타입 침실1 발코니(비확장) 창호 및 72타입 침실2 창호는 소방관 진입이 가능한 창으로 설치되어 18층 이상 세대의 창호와 형태, 열림 방식 등이 상이하며, 본공사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일부 실 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발코니의 위치는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제4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공급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의 외부창호는 이중창호(침실1 발코니 등이 비확장의 경우 외기면 단창호)로 설치되며, 창호 및 도어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형 세대에서 주방 발코니의 경우 내부에 터닝도어, 외부에 단창호가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침실1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는 단열 및 난방 공간이 아니므로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설치 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하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발코니 상부에 상부층 세대의 배수배관 및 당해층 세대의 환기덕트가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 등은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제 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환기 등으로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홈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의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 기준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공사 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디자인,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창호 주변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해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등을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BNK경남은행	207-0176-3383-07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비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멸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입니다.

①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명	선택안	설치수량 및 위치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 10%(계약시)	잔금 90%(입주시)	
59A, 59B	삼성전자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1 / 공기청정기능 미포함	3,600,000	360,000	3,240,000	- 택1
		선택2	[2개소] 거실 + 침실1 / 공기청정기능 포함	4,200,000	420,000	3,780,000	
		선택3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공기청정기능 미포함	6,300,000	630,000	5,670,000	
		선택4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공기청정기능 포함	7,500,000	750,000	6,750,000	
70A, 70B 72, 73 75, 76	삼성전자	선택1	[2개소] 거실 + 침실1 / 공기청정기능 미포함	3,800,000	380,000	3,420,000	- 택1
		선택2	[2개소] 거실 + 침실1 / 공기청정기능 포함	4,400,000	440,000	3,960,000	
		선택3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공기청정기능 미포함	6,600,000	660,000	5,940,000	
		선택4	[4개소]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공기청정기능 포함	7,800,000	780,000	7,020,000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은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6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이하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이 가능한 옵션 품목이며,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타입별 유니트에는 삼성전자 제품이 전시용품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타입별 설치위치 및 수량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디자인 및 사이즈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 배관 연결용 매립박스 기본 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상기 선택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냉매매립 배관(거실, 침실1)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이 정산된 금액으로 제시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발코니 및 실외기실에 냉매 배관 및 응축수 배관이 노출 시공되며,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크기는 본공사 시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시스템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세대 내 냉매박스,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공사는 제외됩니다. (시스템에어컨 옵션 공급금액은 전기콘센트 설치공사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거실 우물천장의 크기 및 설치 부위의 천장 위치,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모델의 기준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며 냉방전용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기기는 견본주택용 전시용품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는 장비 사양 및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는 해당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계약자와 시공사 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공급계약 체결 시 설치 공사비 납부계좌가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이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실외기 루버의 프레임과 루버 크기, 두께, 형태, 색상, 재질, 하드웨어, 설치위치, 손잡이 디자인, 사양,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외기 그릴의 색상은 외관을 위해 평형별, 층수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옵션 계약기간 내에서만 계약이 가능하며, 시공상의 이유로 추가 계약이 불가하오니 계약체결 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천장형 냉매 배관이 설치되며,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기구 위치 및 기타 시공여건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빌트인 가전 및 주방가구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품목	제조사명	제품명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전타입	냉장고 + 김치냉장고 + 냉동고 + 키친장	삼성전자	RR40A79(8)95AP + RZ34A79(8)65AP + RQ34A79(8)45AP + 제작품 / 비스포크	7,500,000	750,000	6,750,000	
	빌트인 인덕션	삼성전자	NZ63B5056AK	1,250,000	125,000	1,125,000	

- 빌트인 가전 및 주방가구 유상옵션은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4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일부 유상옵션 품목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이며, 타입별 선택 가능 품목이 상이합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주방 빌트인 가전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미선택 시 수납공간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의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 선택에 따른 공급금액은 기본으로 제공되는 주방가구의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 주방 빌트인 가전은 선택사항별 지정된 위치에 설치되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③ 현관 중문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제조사명	품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전타입	현관	현대L&C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수동일반형	2,500,000	250,000	2,250,000	

- 현관 중문 유상옵션은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4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현관 중문은 발코니 확장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 품목입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관 중문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현관 중문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현관 중문의 모델 및 사양, 디자인, 제조사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등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침실 불박이장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위치	품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금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전타입	침실3	측면 미니화장대형 불박이장(의류 살균탈취기 포함) / 약 1.5m	1,600,000	160,000	1,440,000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은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4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침실 불박이장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침실 불박이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침실 불박이장의 사양, 디자인 등은 시장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변경 또는 등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는 홈페이지 등의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실 불박이장 내부 의류 살균탈취기 기능은 특정 제품(예. 스타일러, 에어드레서 등)과 상이하며, 견본주택 내 실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Trend-up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	품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시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 59B	선택1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유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100,000	710,000	6,390,000	
	선택2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무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100,000	710,000	6,390,000	
70A, 70B	선택1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유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200,000	720,000	6,480,000	
	선택2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무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200,000	720,000	6,480,000	
72	선택1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유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300,000	730,000	6,570,000	
	선택2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무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300,000	730,000	6,570,000	
73	선택1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유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7,250,000	725,000	6,525,000	
	선택2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무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7,250,000	725,000	6,525,000	
75, 76	선택1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유광)+복도 시트알판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철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7,500,000	750,000	6,750,000	
	선택2	[거실] 전실 프리미엄 브러쉬 광폭강마루+대형 아트월(600*1200, 무광)+복도 시트알판	7,500,000	750,000	6,750,000	

[주방] 주방 상판 엔지니어드스톤+대형 이태리산 사각 싱크볼, 절수형 센서수전, 슬림 라인조명

- Trend-up 유상옵션은 자재 수급 및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4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Trend-up 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이 가능한 옵션 품목입니다.
- Trend-up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Trend-up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Trend-up 옵션 마감재는 본공사 시 원자재의 수급에 따라 색상, 패턴, 나누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Trend-up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 강마루, 주방 일반 엔지니어드스톤 상판, 주방 일반 싱크볼 외 기본 약세사리, 거실 아트월 포세린타일(400×800), 거실복도 및 현관벽 벽지마감 등으로 시공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안내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Trend-up 옵션 마감재는 본공사 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에 따라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73타입 Trend-up 유상옵션 선택 시 주방 슬림 라인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⑥ 열 전도 난방판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명	위치	품목	공급금액	납부일정		비고
					계약시10%(계약시)	잔금90%(입주시)	
59A	(주)스피폭스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열 전도 난방판	1,410,000	141,000	1,269,000	
59B				1,410,000	141,000	1,269,000	
70A				1,580,000	158,000	1,422,000	
70B				1,580,000	158,000	1,422,000	
72				1,770,000	177,000	1,593,000	
73				1,770,000	177,000	1,593,000	
75				1,770,000	177,000	1,593,000	
76				1,770,000	177,000	1,593,000	

- 열 전도 난방판 유상옵션은 공정 진행에 따라 '24년 4월 30일 계약분까지만 적용가능합니다.
- 열 전도 난방판 유상옵션 선택은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이 가능한 옵션 품목입니다.
- 열 전도 난방판 유상옵션 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열 전도 난방판 유상옵션 계약은 계약자가 별도 계약하는 추가선택 사항이며, 열 전도 난방판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열 전도 난방판은 본공사 시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에 따라 동급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 계약자에 한하여 추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 및 공급금액(계약금 등) 납부일정 등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와 제4조의2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 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계약 시점 모델 확정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적용,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 할 수 없음)

- 제시된 제품은 계약자 본인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 및 제품 등을 발주해야 하므로 해당 공사의 착수 이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합니다.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및 납부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및 납부 일정 등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사비(부가세포함)는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⑨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BNK경남은행	207-0176-3396-00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상기의 계좌로 입금 후 견본주택에 납부영수증(입금증, 이체증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시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착오 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201홍길동')

**10**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b>단지 명칭은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펫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b></li> <li>•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본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도면에 명기되는 면적, 치수 등은 실제 시공 과정에서 일부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li> <li>•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사업 부지면적 등은 법령에 따라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내 대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대지를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되, 위치의 지정이나 분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시설에 따라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예정임)의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 수익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li> <li>•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li> <li>•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경계 및 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입주지연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추가요구 시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li> <li>본 사업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 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 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항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2(2017.10.19 시행)에 따른 표시(「건축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내진능력 표시) - 내진능력(MMI등급) = VII (최대지반가속도0.207g)</li> <li>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에 대한 금원 확보와 금액 관리는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li> <li>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신탁사,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 예정)</li> <li>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li> <li>분양홍보물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계약 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li> <li>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 사업은 2021년 3월 26일 최초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인가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li> <li>본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공사기간 및 흙막이 등의 가시설 공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 자연지반 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일부 축소 또는 증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아파트 단지명,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옥상조형물,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명칭</li> <li>2.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포장, D/A(환기구), 배기관, 옥외 시설물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li> <li>3. 기타 관련법령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사항</li> </ol> </li> <li>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용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li> <li>주동,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단지 외부시설물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은 설계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위치 및 면적, 개소, 형태 등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li> <li>해당 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 건축심의, 전문위원회심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계획 협의결과 조건, 관계 기관 심의결과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통선 등), 단지 내 조경수 식재계획과 조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마감재료 및 대지경계선형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ul>
사업지 주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아파트 주변으로 한진스카이뷰, 대원칸타빌 아파트, 부산성의신협 및 기존 존치건물 등이 위치하여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본 아파트 서측으로 거제대로, 동해선 및 단지 주변 인접 도로 등으로 인해 인접 세대는 차량 및 기차 운행에 의한 소음, 진동, 먼지,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본 아파트 경계 바깥의 도로, 인근 상가 및 주택가 등의 현황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본 아파트 인근 도로에 버스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어, 버스의 출발 및 정차 시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li> <li>사업지 주변에 존치건물 등이 인접하여 주변 소음, 먼지, 분진, 조망권, 세대간섭 등으로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향후 인근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불편과 준공 시 일조권, 조망권 등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외부 도로계획 및 도로관련 시설물 등은 별도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현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댐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 부지와의 관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 레벨 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 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주위의 개발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본공사 시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일체)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설계변경 등이 수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합니다.</li> </ul>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인근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 등 시기 조정, 급당인원 변경, 설립계획 보류(취소) 결정 등 향후 여건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교수용계획 등은 해당 관청의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li> <li>• 초등학교 배치는 인근 양정초등학교, 중학교 배치는 남학생은 동의중학교, 여학생은 양동여자중학교에 배치하는 가능하나 학교 배정 및 계획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부산광역시교육청) 관할로 추후 학교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li> </ul>
단지	단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용되어 설계된 단지입니다.</li> <li>• <b>본 아파트 102동 1호라인 측면에는 기계식주차장(아파트 기준 1층~23층, 지하1층에 진출입구 위치)과 기계식주차장용 환기덕트(아파트 기준 지붕층 높이)가 설치되고, 기계식주차장 운행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b></li> <li>• 기계식주차장 화재 시 연기 배출을 위한 연기굴뚝이 102동 1호라인 측벽에 설치될 수 있으며, 연돌효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수종, 테마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부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등의 동선계획 및 단지 내의 경사로, 단차 처리방안, 조경 계획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층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선 위치는 담당 인허가청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입주자 차량 외 지상으로 진입 가능한 차량은 소방, 치안, 이사, 폐기물 수거차량 등 입주민 공공이익과 관련된 차량만 진입 가능하며 개별 사유로 지상에 차량 진입이 필요한 경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li> <li>• 소형 우편(택배)차량은 지하1층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세대는 기존 도로와 단지 내 도로와의 인접 또는 레벨차이에 의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해당 세대의 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물(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재활용 분리수거장, D/A(환기구),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램프 지붕 등) 등은 위치, 디자인 및 재질, 구조,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수거차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그릴창, 제연용그릴창, 옥외 계단, 옥외 경사로 및 지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시행자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기구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공간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기계-전기실, 환기창, D/A(환기구) 등)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이 주거동의 전 후측면 등의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세대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건축 인허가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공사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동 및 부대시설 주변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D/A(환기구) 등이 설치되며, 저층세대 발코니 전·후면 하부에 환풍, D/A(환기구)의 설치로 구조물, 그릴창, 그레이팅, 난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환경권 및 생활권, 조망권이 일부 제한되거나, 사생활 간섭을 받을 수 있고, 상세 위치는 설계도 및 분양자료 등의 시설물 안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등 비주거 부분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등에 의해 일부 세대는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전기-통신시설물(공용-외부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차도 포장재, 수목관리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성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지붕에 조성되는 조경구간에는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자용 출입문이 설치되며 입주민의 출입은 불가합니다. 인접한 저층부 세대의 경우 식재의 위치 및 높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식재 위치 및 수종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각 동 외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 별 상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li> <li>2. 본 아파트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li> <li>3. 공공장소인 조경공간과 동별 주출입구,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대,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li> <li>4. 단지 내 주출입구, 부출입구,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li> </ol> </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환기구)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동출입구, 경비실 위치,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은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일부 변경 및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단지 내외 시설물(출입구, 주차출입구, 경비실, 부대시설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야간조명, 자동차 전조등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모형 및 홍보물 등에 표현된 장애인 점형블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설치되며 공동주택,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으로 이용합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해당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동 주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계획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필로티 내부 벽체는 석재뿔칠로 시공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입주 후 발생하는 제반 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동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옥탑 일부구간 설치되는 경관조명과 외벽에 설치되는 조명형 사인물로 인해 빛 반사,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b></li> <li>•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동별 일부 직각배치로 계획되어 있어 서로 마주보는 일부 세대는 사생활권(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단지 배치도 및 분양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엘리베이터 사양은 각동의 층수에 따라 인증 및 속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의 출입구는 구조에 따라 천장고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수목의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주차램프 등과 인접한 세대는 불빛에 의해 조망권 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의 간섭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부대시설 등 이용에 대해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여건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의 위치 및 동, 층, 호수에 따라 코아 및 주출입구 부분의 평면, 단면, 상호 형태 등의 계획은 동별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획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에는 도로 레벨에 맞춰 계단, 경사로, 수직형리프트 등이 위치마다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고, 인-허가조건 및 관련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에 출입구 레벨 및 출입방법 등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출입구,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옆-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과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며, 상부층은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 옥탑층 옥상수조,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 등으로 인해 일부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작동에 의한 일부 저층세대의 진동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별 1층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및 관리사무소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조망간섭,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음식을 냄새 등 각종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상1층 비상차량 통로 및 조경식재 구간에 관계기관(소방)의 요청에 따라 에어매트 자리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육 및 조경시설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할 수 없으며, 사생활(프라이버시 등)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배기팬,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생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소음, 진동,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이며 기타시설로 자전거 보관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으로 인접 저층세대는 외부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차량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저층부는 램프를 통해 진출입하는 차량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전조등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상가에 인접한 세대는 상가 옥상층 지붕 및 난간 등에 의하여 조망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옥상에 인접한 세대는 방법상 취약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주차입구,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 부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공용홀 내 창호의 개수와 크기가 주동마다 상이하므로 채광 및 환기가 불리한 세대가 발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외관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외부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형태, 재질, 크기, 색상 및 루버의 위치 및 크기 등은 심의 의견 및 인허가 승인 조건, 공사여건, 특화디자인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외관 및 색채, 마감, 동출입구 및 저층부 석재(또는 석재뿔칠) 패턴, 옥탑, 헬리포트, 경관조명, 부대시설 외관 등의 세부 디자인은 단지 외관 차별화를 위해 변경될 예정으로 조감도,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동 측벽의 B/I 설치 개수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별도 마감재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사인물, 장식물은 견본주택 모형도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옹벽, 석축, 주동출입구, 지하출입구 등)은 본공사 시 설계, 시공성, 편의성, 구조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주차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대당 주차대수는 전세대(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지하주차장 및 기계식주차장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총 270대(지하주차장 194대, 기계식주차장 76대)가 계획되었으며,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사용상의 제한에 대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예정임)</li> <li>•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5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지상층에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 지하1층에 진출입구 위치)이 설치되어 기계식주차장 운행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조망권 등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기계식주차장은 아파트 및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용도별, 세대별, 동별로 면적분할이나 위치 지정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 근린생활시설은 인허가조건에 따라 지하1층에 4개소의 주차구획공간이 지정됨)</li> <li>• 기계식주차장(주차타워)은 사용승인 도서에 준하여 설치되며, 전장, 전폭, 전고 또는 중량 등 해당 제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차로의 유효높이 2.3m이상(주차공간은 2.1m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층별, 구간별 높이는 일부 상이할 수 있고, 본공사 시 레벨 변경 및 각종 배관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높이 일부 구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입 출입구 및 지하1층 차로의 유효높이는 2.7m가 확보되어 소형 택배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차장 유효높이를 초과하는 차량은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진입 유효높이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대형차(차량 높이 2.7m 이상) 등의 진입이 불가능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진출입 시 혼잡하거나 대기차량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은 계획상 기동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동과의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으로 승차차 시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을 실로 사용하거나 면적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주차장 상부는 공동주택용(부대복리시설용 등 포함), 근린생활시설용의 각종 배선, 배관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본공사 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관련법규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 수량 및 사양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관련 인허가조건에 따라 지하주차장 내에 승용차공동이용 주차공간(나눔카)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공용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해 공동주택 부지 내에 지역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동 하부 지하층 및 지상1층, 지상17층, 지상36층에는 피난안전구역(대피공간), 환풍, 제연환풍, 소방용 고가수조, 소방용펌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하부층에 인접한 세대는 프라이버시의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동 옥상층에 소방용 웬이 설치되어 일부 고층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웬룸 등은 본공사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전기 유지보수를 위해서 발전기가 가동되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배관에는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사업주체가 장애에 전기공급과 관련, 사업부지 및 주변지역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본 아파트 부지 내 지상 한전개폐기 설치 및 부지 무상 제공을 하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부지내 한전패드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위치이동 및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 위치 및 우수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은 분리가 불가능합니다.</li> <li>• 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CCTV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법과 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므로 시스템 설치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원패스 시스템은 공동현관문 자동열림 및 승강기호출(로비층)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구현하는 방식(스마트폰Key방식)으로 별도의 원패스키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별도로 지급하는 입주자 출입카드(RF 방식)를 사용하여 수동 Tag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공동현관 출입 가능)</li> <li>• 원패스 시스템의 경우 일부 스마트폰은 제조사 및 OS 정책에 따라 연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여 지하1층 집중구내통신실 및 지상17층 제연웬룸(3개소) 내에 이동통신 설비용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1층 각종 출입구에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엘리베이터 홀의 저층부는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창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확장 선택시 외부창호는 입면분할 창호(주방은 미서기창)가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창호는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본공사 시 형태 및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입면분할 창호 설치에 따른 주동 창호 특성상 이삿짐 운반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하여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창호 등은 구조 계산 결과에 따라 형태 및 재질,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현관방화문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72타입(2층~16층 해당) 침실2 창호에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창호 일부가 내부로 열리는 구조이므로 창호 주변에 가구 배치 시 사용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70A, 73, 75, 76타입(2층~16층 해당) 침실1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진입창이 설치되며, 창호 일부가 내부로 열리는 구조이므로 빨래건조대(2층에는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음)와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호 개폐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합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단위세대</b></p>	<p style="text-align: center;"><b>평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홍보물 상의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기본 제품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청약 및 계약 체결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는 동일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li> <li>• 각종 홍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함)</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기준 2.3m이며, 실외기 및 다용도실 등 발코니 부분과 욕실, 현관의 천장고는 각각 상이합니다.</li> <li>•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세대 우물천정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스배관이 주방상부장으로 지나서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 주방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주방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의 내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일 주택형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침실등이 침실 중심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축소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발코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침실1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천장에는 상부층 세대의 하향식피난구 및 사다리가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하층 세대인 2층 세대의 침실1 발코니(비확장)에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따라 하향식피난구는 설치되지 않고, 별도 구획(칸막이벽 및 도어 설치)된 피난공간이 설치되며 침실1 발코니(비확장)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므로 별도의 빨래건조대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본공사 시 설계변경을 통해 피난공간이 삭제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침실1 발코니(비확장)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는 외부창호보다 낮게 시공되며, 전열교환기 및 배관 등이 외부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li> <li>• 피난공간 내부에는 우배수 입상관이 설치됩니다.</li> <li>• 피난공간의 칸막이벽 및 도어의 철거 등 임의의 변경은 불가하고 피난공간 내부에는 상부층 세대의 피난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적재물 등의 보관이 불가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li> <li>•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사이즈가 상이합니다.</li> <li>• 세대 타입에 따라 발코니 등의 천정에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코니의 천장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건조기 설치시 보일러 점검 및 교체에 따른 건조기 이설 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가구, 마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장'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청약 및 계약 이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세대내 가구장 상부 물딩 및 복도 아트월 및 시트판넬의 형태는 본공사 시 마감 개선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73타입 주방 라인조명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세대내 수전 위치는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어 온수분배기 설치로 인해 수납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세대 내부의 가구(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욕실장 후면 본 타일 미시공, 불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li> <li>• 침실과 욕실의 도어에 손끼임 방지가 제공(현관문, 주방 발코니문 제외)되며, 제품사양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시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경, 비틀림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공간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받침 방지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출입시 문턱에 의한 신발 걸림 등이 있을 수 있음)</li> <li>• 주방상판은 제품 특성상 조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색상 및 나눔 부위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가구 힌지, 레일 등 가구 하드웨어는 본공사 시 제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 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 대피공간 도어, 발코니 도어 등)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개폐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부 포인트 타일 요철로 인해 줄눈마감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타일 나누기 및 단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 아트월, 욕실, 발코니 등)</li> <li>• 아트월, 현관바닥, 욕실, 다용도실 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 가구는 각 평형별 크기가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또는 모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 등을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골조와 조적 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에 설치되는 수전류 및 각 욕실의 마감자재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도기류는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에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에 설치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외부에 시공되는 공장 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li> <li>• 본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장'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전기·기계설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각 세대는 개별난방으로 계획됩니다.</li> <li>•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 코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주방TV폰 배선이 후면기구에 연결됨에 따라 노출되어 시공됩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냉매배관 및 드레인 등이 노출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서 주방상판에 가스점검을 위한 점검구 또는 점검용 홀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동체감지기는 2층 세대 및 최상층 세대에 한하여 설치됩니다.</li> <li>•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침실(출입문 뒤편) 중 한 곳에 설치되며, 본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제어 스위치 기능 중 가스차단 기능을 실행할 경우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복구를 할 경우에는 주방에서 입주자가 직접 수동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승강기 호출기능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호출기능만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세대는 거실과 안방에 실내기용 콘센트 반영)</li> <li>•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안방(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별도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인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을 선택시 안방 및 거실의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별도 설치하지 않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72타입 실외기실 내부에는 다른 타입과 상이하게 가스입상배관이 추가로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 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선) 선택(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빌트인 가전류, 현관 중문, 침실 불박이장, Trend-up 등)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위치 및 설치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대기전력차단,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약세사리류, 위생도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통신단자함 내부에는 별도의 허브장치가 지원되지 않으며, 해당 장치는 인터넷 설치 시 각 사업자에게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li> <li>• 홈네트워크 월패드, 주방TV, 욕실폰의 전화 수신 기능은 국선전화를 가입한 세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li> <li>• 욕실 내 욕조하부,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 외부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급수급탕 분배기는 욕실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되며, 본공사 시 시공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슬러브 위치 등은 설비, 전기 계통을 고려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세탁실 또는 실외기실에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세대 세탁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우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 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에어컨 운전시 실외기실 외부 그릴은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항상 열려 있는지 확인 후 운전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 하지 않는 상태의 문제 발생시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전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내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li> <li>• 전기설비 마감재(분전반, 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주방TV 등)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1 발코니 또는 주방 발코니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전열교환 환기유니트와 간섭시 조명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73타입은 다른 타입과 상이하게 주방상부장 하부 라인 조명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기타	I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IoT/홈네트워크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전용 인터넷 회선 설치 비용 등은 입주자의 부담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li> <li>• 홈IoT/가전기기 외부제어시스템 및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인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를 설치하여야 하며(통신사 무관),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IoT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li> <li>•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IoT서비스업체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li> <li>• 홈IoT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은 사용검사(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또는 동별사용검사일 포함)을 기준으로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무상서비스 기간(24개월 또는 36개월 - IoT서비스 제공업체 정책에 따라 상이함)이 지난 날부터 서비스 신청 입주인에 한하여 월요금 예정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청구 또는 별도 청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성인식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음성인식 스피커를, 가전제어 서비스는 홈IoT 서비스와 연동이 가능한 가전기기를 각각 입주자의 부담으로 별도로 구매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기 음성인식 스피커와 가전기기는 제조사, 제품의 사양 및 모델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홈IoT 서비스, 음성인식 서비스 및 가전제어 서비스는 추후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일부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이 되거나 서비스의 제공이 종료될 수 있고,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IoT서비스 제공업체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IoT 서비스는 입주자와 IoT 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관계이며, 시공사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 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 서비스 제공업체에 확인바랍니다.</li> <li>단지 네트워크망과 연동하는 IoT 서비스 업체는 본공사 시 선정 예정이며(가전사 또는 이동통신사 중 1개사), 선정된 업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 집기는 본공사 시 재질, 색상, 디자인,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기본 제공 품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은 공간, 기본 마감재 및 내부 집기류 일부가 제공됩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됩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사가 시공하므로 마감재 및 기본 제공 품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li> <li>부대복리시설 등의 일부 공간은 입주시 A/S센터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 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li> </ul>
	근린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외부도로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이용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일부 101동 및 102동 하부)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의 입간판은 임의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승인권자와의 사전협의 후(지침준수 등) 설치하여야 함)</li> <li>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타 용도(근린생활시설 등)의 영업을 위한 화물차 등의 입·출차 및 이용자들로 인한 소음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ul>
건본주택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 및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 모형의 주차장 진입 상부 구조물, 주동 출입구,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부대복리시설 등은 본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에는 59B타입, 76타입 유니트가 건립되며, 건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당사 홈페이지, 분양홍보물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없으나,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li> <li>주동 옥탑층의 층수 표기 사항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주방TV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현된 것이며, 본공사시 KS조도 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됩니다.</li> <li>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조명은 매립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출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 시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건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분양홍보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 신고 및 승인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사이버 건본주택의 VR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상이므로 사이버 건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등은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단지 주변현황, 본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온도조절기, 스위치,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기계식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고, 추후 현장여건 등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없는 타입의 조명기구류는 타입에 따라 건본주택의 조명기구와 위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전시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양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 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건본주택용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시공되지 않습니다.</li> <li>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제외됩니다.</li> </ul>

• 건보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 품목 뿐 아니라 유상옵션 품목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이전에 마감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계약자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본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주택법」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미대상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15조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27조4항1호에 따라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양정동 399-2 일원 주상복합  
건 조 수 : 69세대(신축)  
준공(예)일 : 2024년 1월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99-2 일원

중 수 : 지하 5층, 지상 36층 / 244세대  
면 적 : 37,903.06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설 계 자 : 다용 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인증번호 : G-SEED-P-2021-0162-7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 2021.2.15. ~ 사용종결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 우수등급(녹색건축물(공동주택-업무))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도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수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총합등급 ★★☆☆

2021년 2월 15일

\* 세부 인증을 위한 건축물은 현장 출제 인증을 받거나 국제, 설계인증에 따라 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 양정동 399-2 일원 주상복합 건축공사(주거)  
준공연도 : 20240102  
주 소 :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399-2  
중 수 : 지하 5층 / 지상 36층  
면적적 : 33815.0540(㎡)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다용

**인증 개요**

인증번호 : 건-유-에-11-0071  
평가자 : 노광환  
인증기관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경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비율상
에너지 저소비량 건축성적	64.8	에너지효율등급	1	CO <sub>2</sub> 배출등급	25.1

에너지 사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23.1	50.8	40.3	10.7
급탕	30.7	35.5	26.4	7.2
조명	11.0	11.0	30.4	5.2
환기		4.3	11.9	2.0
합계	64.8	101.6	109.0	25.1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질적, 가용, 연소,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률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상온실가스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 ) V [설치되지 않음]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고품질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1월 22일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구분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구획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2.1m
지하2층 ~ 지하5층	2.3m	2.3m	2.1m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소방/정보통신
상호	아키텐건축사사무소	(주)일승범이앤씨	우일기술단(주)	(주)건일씨엠
금액	₩1,540,000,000-	₩96,800,000-	₩77,000,000-	₩569,8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음.(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4-0000500 호	₩ 98,198,75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등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고지사항

※ 본 공급시설(공동주택)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주)에스제이대일 외3,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두산건설(주),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제이대일 외3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 (주)에스제이대일 외3과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제이대일 외3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에스제이대일 외3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에스제이대일 외3와 시공사인 두산건설(주)에게 있습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사업관계자 및 사업주체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 호	(주)하나자산신탁	(주)에스제이대일	두산건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거제대로 38, 5층(양정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논현동, 두산빌딩)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80111-1234664	110111-0194277

※ (주)에스제이대일을 제외한 시행위탁자 3인은 분양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주)에스제이대일에게 위임하였으며, (주)에스제이대일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 날인 예정임

####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건축허가 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건축허가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건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 사이버 견본주택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홈페이지(<http://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양정.com>)
-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양정' 견본주택(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1) / ☎051-746-3992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주택공급신청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홈페이지에서 확인바랍니다.